

부산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3313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남재훈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39지분에 관하여, ㉠ D과 피고 B 사이에 2020. 5. 12.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 B는 D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5. 15. 접수 제559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②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39지분에 관하여, ㉠ D과 피고들 사이에 2020. 3. 2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29,669,4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69,4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F, G과 형제이다.
- (2) 망인은 전처와의 사이에 피고 C와 H을 두었고, 이후 I과 재혼하여 그 슬하에 J, 피고 B 및 D을 두었다.
- (3) D은 2006. 6.경부터 거제시 소재 K에서 근무해 왔는데, L(개명전 M)와 혼인하였다.

나. 망인의 종전 재산관계

- (1) 망인은 1971. 8. 25.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부동산’으로, 별지2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2-1, 2-2, 2-3부동산’으로 각 약칭한다)에 관하여 각 F, G과 공유관계(각 1/3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2) 망인은 2017. 9. 7. 부산 부산진구 N건물 O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P와 함께 거주해 왔다.

다. D의 대출금 채무

D은 2017. 12. 1. 원고와 ㉠ 피보험자 K 주식회사 Q조합(이하 ‘Q조합’라고 한다), ㉡ 보험금액

3,672만원, ③ 보험기간 2017. 11. 30.부터 2020. 11. 30.까지의 각 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보증보험 계약에 기초하여 그 무렵 Q조합로부터 3,600만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D의 형사사건

- (1) D은 거제시 R아파트 S호(2009. 6. 30. L 명의로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L, 아들 및 장모와 함께 거주해 오던 중, 2017. 6. 초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수회 장모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2018. 5. 23.경 장모의 신고로 입건되었다.
- (2) 망인은 D의 부탁에 따라 2018. 11. 15. T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D에게 송금하여 형사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3) D은 2018. 11.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죄로 기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합170)되었다.

마. 망인의 사망

D은 2019. 8. 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망인은 2019. 9. 26.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바. D의 항소

D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248]에서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항소심은 2019. 10. 25. 위 보석신청을 인용하였다.

사. 상속등기

- (1) P과 피고들을 포함한 5명의 자녀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20. 4. 2.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각 법정상속분(P 3/29지분, 자녀들 각 2/39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쳤다.
- (2) 상속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2-1, 2-2, 2-3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을 피고들이 공동상속(피고 C 각

4/39, 피고 B 각 9/39)하는 것으로 협의하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그 협의에 따른 각 상속등기를 마쳤다.

아. 공유물분할

피고들과 F, G은 2020. 3. 27. ‘이 사건 2-1부동산을 G의 단독소유로, 이 사건 2-2부동산을 F의 단독소유로, 이 사건 2-3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피고 C 4/13, 피고 B 9/13)로 하기’로 공유물분할 협의를 한 후, 2020. 4. 2. 그 협의에 따른 각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쳤다.

자. 증여

P, J 및 D은 2020. 5.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증여한 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 5.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차. D의 재구속 및 보험사고의 발생

(1) D은 이 사건 대출계약을 2회(2018. 11. 30. 및 2019. 11. 30.)에 걸쳐 갱신하면서 2020. 7. 21.까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으나, 항소심이 2020. 8. 19.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D을 재구속함에 따라, 그 다음 이자납부일인 2020. 8. 21.부터 이자의 납부를 지체하게 되었다.

(2) 이에 Q조합는 2020.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10. 30. Q조합에게 보험금 31,964,370원을 지급하였다. (갑3내지 5호증 참조)

(3)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보증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20차전5713)을 신청하여, 2020. 12. 7. 위 법원으로부터 ‘32,145,640원 및 그 중 31,964,3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 내지 19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D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① 피고 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② 이 사건 2-1, 2-2, 2-3부동산의 각 상속지분을 피고 B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한 후 유일한 재산인 위 각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위 증여계약 및 분할협의를 각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2) 피보전채권의 존부

망인이 2019. 9. 26. 사망한 사실, D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청구가 인용되어 2019. 10. 25. 석방된 사실, 그 후 상속인들은 2020. 4. 2.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각 법정상속분(P 3/29지분, 자녀들 각 2/39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2-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사실, 피고들과 F, G은 같은 날 공유물분할 협의에 따른 공유물분할등기까지 마친 사실, P, J 및 D은 2020. 5.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증여한 사실, D은 2020. 7. 21.까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으나, 2020. 8. 19. 항소기각 후 보석취소로 재구속됨에 따라, 2020. 8. 21.부터 이자 납부를 지체한 사실, 이에 Q조합은 2020. 10. 20. 원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0. 10. 30.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D은, 비록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직장에 출근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이었으므로, D은 장모와의 합의나 형사사건의 결과에 관하여 낙관적인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까지는 3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D이 이 사건 대출금 이자의 납부를 지체한 것은 변제자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신병이 구속되어 정상적으로 직장(K)에 출근할 수 없게 된 결과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대출금이 3,600만원인데, 이는 D의 급여소득 등에 비추어, 그다지 경제적 부담을 줄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이 납부할 이자도 월 10여 만원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였던 점, ⑤ 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경위, 위 각 처분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각 행위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D에게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설령 위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들은 위 각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분할협의 당시 그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별지